

##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(검사 등)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44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,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 제43조(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6. 10.

###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

#### 1. 공고 대상(과태료재판 집행위탁)

구 분	사건번호 (납부자명)	반송주소	반송사유	위반항목	과태료 금액(원)
본부과	2025과1143 (서*회)	경기도 파주시 광탄면	기타	건설기계관리법 위반 (정기검사 미필)	1,500,000
본부과	2025과1745 (서*회)	경기도 파주시 광탄면	기타	건설기계관리법 위반 (정기검사 미필)	3,000,000

2. 공고기간 : 2026. 6. 10. ~ 6. 30.

3. 납부기한 : 2026. 6. 30.

#### 4. 공고내용

- 가.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,  
나. 대상자께서는 방문이나 전화 문의(☎031-940-5911)를 통해 내용 확인 후, 고지서(가상계좌)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다. 아울러,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,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압류)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의처 :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(☎ 031-940-5911)